

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125892      |
| 의 퇴 인 | 이만희의원        |
| 회 답 일 | 2024. 1. 25. |
| 추계번호  | 23D5036      |

# 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제정안에 따라 심의위원회 및 추모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2억 8,2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118억 7,800만원(연평균 23억 7,6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5  | 2026  | 2027  | 2028  | 2029  | 합계     | 평균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
| 심의위원회 및 추모위원회 운영<br>(안 제5조, 제6조 및 제33조) | 2,282 | 2,329 | 2,375 | 2,422 | 2,470 | 11,878 | 2,376 |

주: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5조(10·29 이태원참사 피해 지원 심의위원회) 및 제6조(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 등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10·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·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둠</li> <li>-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</li> <li>-심의위원회는 심의·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,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음</li> </ul> | 의무규정 |
| 2  | 안 제7조(배상금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10·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「민법」, 「국가배상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배상의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배상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음</li> <li>-국가는 신청인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3  | 안 제10조(위로 지원금의 지급대상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함</li> <li>-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·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희생자와의 관계,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정함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4  | 안 제11조(손실의 보상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국가는 10·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구조 및 수습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신체적·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</li> <li>-국가는 10·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영업활동이 제한되는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상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5  | 안 제22조(생활<br>지원금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국가는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</li> <li>-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,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6  | 안 제23조(심리<br>상담 등의 지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국가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7  | 안 제26조(근로<br>자의 치유휴직 지<br>원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함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8  | 안 제27조(「긴급<br>복지지원법」 및<br>「아이돌봄 지원<br>법」 등에 대한 특<br>례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로 봄</li> <li>-국가등은 10·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</li> <li>-지원의 기준기간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</li> </ul> | 의무규정 |
| 9  | 안 제29조(공동<br>체 회복 프로그램<br>의 개발·시행)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특성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함</li> <li>-국가등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10 | 안 제30조(공동<br>체 복합시설의 설<br>치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·복지·돌봄·노동·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 및 피해자와 협의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고,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</li> <li>-복합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11 | 안 제32조(추모<br>사업의 시행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국가등은 10·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를 위하여 추모공원의 조성, 추모기념관의 건립, 추모비의 건립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12 | 안 제33조(10·29<br>이태원참사 희생<br>자 추모위원회)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이 법에 따른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·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둠</li> <li>-추모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13 | 안 제36조(재단<br>출연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국가는 10·29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 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</li> <li>-추모시설의 운영·관리 등 추모사업을 재단에 위탁할 수 있음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
##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계여부 | 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5조(10·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) 및 제6조(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 등) | ○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 | 안 제7조(배상금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×    | 「국가배상법」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규모 등을 현재 시점에서는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  | 안 제10조(위로지원금의 지급대상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×    | 위로지원금의 지급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, 지급대상자 수, 지급 규모 등을 현재 시점에서는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              |
| 4  | 안 제11조(손실의 보상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×    | 구조·수습활동 참여, 영업활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손실 보상 대상자 수, 손실보상금의 규모 등을 현재 시점에서는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   |
| 5  | 안 제22조(생활지원금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×    |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, 지급대상자의 수, 금액 등을 현재 시점에서는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             |
| 6  | 안 제23조(심리상담 등의 지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×    | 심리상담 지원의 내용·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, 심리지원 대상자 수, 지원내용, 지원규모 등을 현재 시점에서는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    |
| 7  | 안 제26조(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×    | 치유휴직 신청자 수, 근로자별 근로유지비용 지원규모 등을 현재 시점에서는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  | 안 제27조(「긴급복지지원법」 및 「아이돌봄지원법」 등에 대한 특례)             | ×    | 피해자 중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긴급지원대상자 수, 지원 금액 등을 현재 시점에서는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|
| 9  | 안 제29조(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·시행)                         | ×    |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규모, 내용, 소요비용 등을 현재 시점에서는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                      |
| 10 | 안 제30조(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×    |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 규모 등을 현재 시점에서는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1 | 안 제32조(추모사업의 시행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×    | 추모사업의 종류, 추모공원·기념관 등의 위치, 규모 등을 현재 시점에서는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2 | 안 제33조(10·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)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3 | 안 제36조(재단 출연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×    | 재단 출연 규모 등을 현재 시점에서는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안 제5조에 따라 설치·운영되는 10·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함)의 구성, 회의참석수당 및 안전검토비는 여수·순천 10·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(이하 “여수·순천위원회”라 함)<sup>1)</sup>의 사례를 준용하고, 심의위원회는 연 4회 회의를 한다고 가정함
  - 여수·순천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이 중 위촉직은 9명임
  - 2023년 기준으로 회의참석수당 및 안전검토비는 각각 20만원이며, 추계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
- 안 제6조제6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심의·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,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둔다고 가정하며, 지원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2024년 여수·순천사건 사실조사단의 예산을 준용함
  - 여수·순천위원회는 진상규명 및 희생자·유족의 심사·결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사실조사단을 두고 있으며, 사실조사단의 운영을 위해 2024년 2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음<sup>2)</sup>
- 안 제33조에 따른 10·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(이하 “추모위원회”라 함)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4·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<sup>3)</sup>의 2024년 예산을 준용함

1) 「여수·순천 10·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(여수·순천 10·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) ① 여수·순천 10·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·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,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·순천 10·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여수·순천 10·19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
2. 여수·순천 10·19사건 진상규명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
3.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·결정에 관한 사항
- 4.~11. (생략)

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~⑨ (생략)

2) 세부사업 여수·순천 10·19위원회 지원(2437-300)

3) 「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 제37조(4·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)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·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(이하 “지원·추모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지원·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- 국무조정실은 4·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운영하고, 사실조사 및 추모사업 등을 위한 지원조직 운영을 위하여 2024년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음<sup>4)</sup>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<sup>5)</sup>를 적용함
-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 부칙과 법안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함

#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#### 가. 심의위원회 운영(안 제5조 및 제6조)

- (위촉위원 수당) 추계의 전제에 따라 여수·순천위원회의 구성, 회의참석 수당 및 안전검토비를 준용하여 9명의 위촉위원에게 매회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, 연 4회 회의를 하는 경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1,4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
- (지원조직 운영)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24년 여수·순천사건 사실조사단의 예산을 준용하고,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심의위원회의 지원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2025년 21억 5,7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112억 3,300만원으로 추계됨
- 개정안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1억 7,100만원 등 총 113억 300만원으로 추계됨

1. 생활지원금·심리상담·교육비 등 지원, 공동체회복 지원, 교육환경 개선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 
 2. 추모공원, 추모기념관, 추모비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 
 3. 제40조에 따른 4·16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  
 4. 그 밖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
 ③~⑧ (생략)  
 4) 세부사업 세월호피해지원단 운영(7035-310)  
 5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

(2023년 3월 기준, 단위: %)

|               | 2024 | 2025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
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소비자물가상승률(CPI) | 2.7  | 2.4  | 2.1  | 2.0  | 2.0  | 2.0  |

[표 2] 심의위원회 운영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| 2025  | 2026  | 2027  | 2028  | 2029  | 합계    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
| 위촉위원 수당  | 14    | 14    | 14    | 14    | 14    | 70     |
| 지원조직 운영비 | 2,157 | 2,202 | 2,246 | 2,291 | 2,337 | 11,233 |
| 합 계      | 2,171 | 2,216 | 2,260 | 2,305 | 2,351 | 11,303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## 나. 추모위원회 운영(안 제33조)

- 추계의 전제에 따라 4·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 
회의 2024년 예산을 준용하면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억 1,100만원  
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5억 7,5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3] 추모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| 2025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합계  |
|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
| 추모위원회 운영 | 111  | 113  | 115  | 117  | 119  | 575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## 다. 추계 결과

- 제정안에 따라 심의위원회 및 추모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 
는 2025년 22억 8,2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118억  
7,8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4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| 2025  | 2026  | 2027  | 2028  | 2029  | 합계    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
| 심의위원회 운영 | 2,171 | 2,216 | 2,260 | 2,305 | 2,351 | 11,303 |
| 추모위원회 운영 | 111   | 113   | 115   | 117   | 119   | 575    |
| 합 계      | 2,282 | 2,329 | 2,375 | 2,422 | 2,470 | 11,878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## V. 작성자

-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행정비용추계과 | 한예슬 | 오명희 |

-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|
| 한예슬 | 02-6788-4831 | yeseulhan@nabo.go.kr |